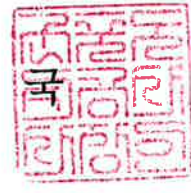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3년 11월 1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2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(특별휴가)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안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 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특별휴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신설)</p>	<p>제32조(특별휴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

참고사항

□ 「군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

제26조(특별휴가)

③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